

경운대학교 최고위관리자과정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한다) 학칙 제26조에 의하여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최고위관리자과정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12.31.>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원 최고위관리자과정(이하 “본 과정”이라 한다)의 입학절차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사업) 본 과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.

1. 최고위관리자의 교육 훈련
2. 산학협동과 관련된 사업
3. 과학적 경영기법의 보급
4. 경영정보의 교환 및 조사연구
5.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
6. 기타 본 과정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2장 입학 및 수료

제4조(입학정원) 본 과정의 입학정원은 40명 내외로 한다. <개정 2019.12.31.>

제5조(지원자격) 본 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공, 사 기업체의 최고경영자와 임원
2. 공공기관, 단체의 장 또는 임원
3. 공, 사, 기업체의 중견관리자 및 임원
4. 자영업자 및 전문직 경영인
5. 도, 시의회 의원
6. 초, 중, 고등학교 교원
7. 기타 위 각항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한 지도자급 인사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

제6조(지원서류) 본 과정의 입학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수강지원서(본 대학원의 소정양식)
2.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

3. 주민등록등본
4. 반명함판 사진

제7조(전형방법) 본 과정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전형에 의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9.12.31.>

제8조(과정의 구성) 본 과정은 정규수업 및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한다.

제9조(수료증) ① 본 과정의 원생은 정규수업 일수의 1/2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.

② 기수료자나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미수료된 자 중에서 본인이 재수강을 원할 경우 차기 과정에 등록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.

③ 본 과정 수료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.

제3장 조직 및 재정

제10조(위원회) 본 과정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, 동 위원회의 업무는 대학원 위원회가 담당한다.

1.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
3. 원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11조(회계원칙) 본 과정의 회계관리는 일반회계 및 기성회계에 편성 운영한다.

제12조(세입, 세출) 본 과정의 세입은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전형료, 입학금, 수강료 및 기성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과정의 운영비, 교직원의 연구비 및 기타 대학발전을 위한 경비로 한다.

제13조(징수기일) 수강료의 징수기일은 총장이 정하되 과정의 개시 전에 징수하여야 한다.

제14조(수강료의 반환과 감면)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과납의 경우에는 과납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을 거친 뒤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다. <개정 2019.12.31.>

1.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재수강을 하는자.
2. 본교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동 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가 크다고 인정하는 자
3. 본교 교직원으로서 재직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(배우자 포함)

제15조(기타) 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9.12.3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서식 제1호】

제 호

수 료 증

성 명 :

생년월일 :

위 사람은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최고위관리자
과정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인정 함.

년 월 일

경운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장(학위) (성명) 직인
이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경운대학교총장 (학위) (성명) 직인